

[ ( ) ]

<

>

: 2020. 4. 00.

1

1 ( ) 2003 4 1 ' ,

2 ( )

3 ( )

1.

2.

3.

4.

4 ( ) ① ( “ ” ) ,

② 5 ( , , , , ) 1

③

2

5 ( )

6 ( )

7 ( )

8 ( )

3

9 ( ) ( )

(Draft)

10 ( )

11 ( ) ① ( )

1

②

제12조(시상) ① 학술제에 발표된 우수한 논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상할 수 있다.

1. 구두발표부문 최우수상, 우수상, 장려상
2. 포스터발표부문 최우수상, 우수상, 장려상

② 수상논문은 조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논문 중 학술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한다.

제13조(논문집) 학술제에 발표된 논문을 모아 논문집으로 발간한다.

#### 제 4 장 학위논문상

제14조(대상) 매 학기 학위청구논문심사에 합격한 석사·박사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한다.

제15조(선정방법)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학술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한다.

제16조(시상) ① 석사·박사 학위논문 각각 최우수논문 및 우수논문을 선정하여 학위수여 시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.

② 최우수상 석사·박사 각 2편 내외, 우수상 석사·박사 각 5편 이내를 선정한다. 다만, 선정할만한 우수논문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.

#### 제 5 장 연구논문상 (연구장려장학금)

제17조(대상) 매 학기 본교 대학원에 재학(연구재학 포함) 중인 학생이 한국연구재단 등재(후보)학술지 또는 국제학술지(SCI, SSCI, A&HCI, SCIE, SCOPUS 등) (이하 “학술지”)에 게재(게재예정으로 확정)한 논문

제18조(선정방법) 학술지에 게재(게재예정으로 확정)된 논문은 이 장학금 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 게재(게재예정으로 확정)일이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, 매 학기 소정의 신청서 [주임교수 추천서, 논문게재(예정)확인서, 해당 논문의 별쇄본 포함]를 제출하여, 학술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.

제19조(시상) ① 단독연구, 2인 공동연구, 3인 이상 공동연구로 구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대학원장이 정하는 연구장려장학금을 지급한다.

② 학술위원회는 대학원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추천내용을 심사하여 연구장려장학금의 지급범위를 결정한다.